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86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안호영 · 윤준병 · 신정훈
이학영 · 최기상 · 복기왕
문금주 · 이춘석 · 서미화
김우영 · 박지원 · 안도걸
박홍배 · 김윤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중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5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2(문화예술산업종사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산업종사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년 동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1조의23(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제91조의24(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22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를 산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5(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용역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6(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

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7(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급여는 제91조의24에 따른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을 “제56조, 제91조의19제2항 및 제91조의26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을 “제54조제2항, 제91조의19제1항 및 제91조의26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3장의5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u> <u>대한 특례</u> <u>제91조의22(문화예술산업종사자</u> <u>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u> <u>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문화예술산업종사자”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실 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 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 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하는 사람(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2.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년 동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빼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
득으로서 같은 법 제164
조의3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국
세청에 신고된 금액

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

제91조의23(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
술산업종사자의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
다.

제91조의24(문화예술산업종사자

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하

여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평균임금”은 “평균
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2제2호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
해를 입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년 동
안의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
는 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
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
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
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
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
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
다.

⑤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신 설>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5(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용역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26(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

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

<신 설>

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뺀 금액을 부분휴업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7(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문화예술산업중사자의 보험급여는 제91조의24에 따른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산업중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